

대학원 학칙시행내규 개정안 신규대조표

현행	개정안
<p>제25조 (선수과목 이수학점) ① 이수대상자는 입학 후 4학기 이내에 전공학과의 기초가 되는 하위과정의 전공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, 성적 표시는 P(합격), NP(불합격)으로 한다. (개정 2010.9.1.)</p> <p>② 선수과목 이수학점은 6학점(예능계열은 4학점)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. (개정 2019.6.1.)</p> <p>제26조 (선수과목 신청) 선수과목 신청은 학기당 6학점을 초과 신청할 수 없으며, 그 성적이 B학점 미만일 때에는 재수강하여야 한다.</p>	<p>제25조 (선수과목 이수학점) ① <u>이수대상자는 전공학과의 기초가 되는 하위과정의 전공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,</u> 성적 표시는 P(합격), NP(불합격)으로 한다. (개정 2010.9.1.)</p> <p>② 선수과목 이수학점은 6학점(예능계열은 4학점)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. (개정 2019.6.1.)</p> <p>제26조 (선수과목 신청) 선수과목 신청은 <u>학기당 6학점을 초과 신청할 수 없다.</u></p>
	<p>부칙</p> <p>1. (시행일)본 개정 학칙시행내규는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</p>